

학생생활·복지위원회 규정

- 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3. 10. 29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23. 6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학생생활·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입학처장이 되며,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제3조(임기) 본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1.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
2.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
3.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규정은 폐기하고, 관련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3-0-26 학생생활·복지위원회 규정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